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4년 2월 16일 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2월 2일, 고영찬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2월 2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2월 16일)
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요건이 엄격하여 지정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벤 처기업부의 '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(안)'에 따라 불필요한 등록요건을 삭제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장벽을 낮추 어 골목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범위 산정 관련 단서 조항 삭제(안 제4조 제1항)
-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변경(안 제4조 제1 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3호)

- 구역 내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 규정 삭제
-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 규정 삭제
- 해당 구역 전체 상인의 명부 신설
- 해당 구역 지번 및 면적 신설
- 골목형 상점가 지정(변경)신청서 및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서식 신설
 (안 제4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, 안 제4조 제3항 별지 제2호서식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및 「소상 공인 기본법」에 근거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필요한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동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골목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음.
- 조례안 관련 서울시 타 자치구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서울 25 개 자치구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 며, 그 중 19개 자치구에서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 2분의 1 이 상 동의기준을 삭제하였음.
- 본 안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'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(안)'(2022. 1. 11)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으로

-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장벽을 낮추어 신규 지정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.
-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